



# 별정통신사업 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올 1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별정통신 사업이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정통신 현황조사를 통해 활성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업지원팀

## 건의배경

- 별정통신사업제도는 '97.2월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을 이행하고, 기술발전 등 정보통신 사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7. 8월 도입되어 올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전화세 등 제도의 미비점과 기간통신사업자의 미온적인 대응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임
- 6월 현재 정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36개 별정통신사업자중 국제음성재판매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24개 업체)는 한국통신과의 통신망간 접속방법, 낮은 수수료·할인을 및 세금관련 문제 등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여건임

- 특히,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장기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당초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증대와 관련 산업육성이라는 기본취지는 퇴색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업체의 손실도 막대해 지고 있는 실정임

※ 시설투자비 : 총 500~600억원(업체당 평균 18억원) 종업원수 : 총 500여명 (업체당 평균 16명)

- 따라서, WTO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사업현황

- 등록(총 36개 업체, 70개 역무)

◇ 6.9일 현재

| 구 분                       | 제 공 역 무 |     | 사업자수(업체) | 비 고 |
|---------------------------|---------|-----|----------|-----|
| 설비보유<br>재판매사업<br>(37개 업체) | 음성재판매   | 시 내 | 1        |     |
|                           |         | 시 외 | 9        |     |
|                           |         | 국 제 | 16       |     |

| 구 분                        | 제 공 역 무          |     | 사업자수(업체) | 비 고 |
|----------------------------|------------------|-----|----------|-----|
| 설비보유<br>재판매사업<br>(37개 업체)  | 인터넷폰             | 시 외 | 2        |     |
|                            |                  | 국 제 | 13       |     |
| 설비미보유<br>재판매사업<br>(19개 업체) | 호집중사업(가입자모집대행)   |     | 19       |     |
|                            | 재과금사업            |     | 2        |     |
|                            | 음성회의서비스          |     | 1        |     |
| 구내통신사업                     | 구내전화, LAN, 인터넷 등 |     | 7        |     |
| 합 계                        |                  |     | 70       |     |

○ 신청(총 5개 업체)

◇ 6.9일 현재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 설비미보유<br>재판매사업 | 구내통신<br>사업 | 합 계 |
|------------|------|----------------|------------|-----|
| 음성재판매      | 인터넷폰 |                |            |     |
| 2          | 1    | 3              | 2          | 8   |

○ 사업개시(총 12개 업체, 15개 역무)

◇ 6.9일 현재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 설비미보유<br>재판매사업 | 구내통신<br>사업 | 합 계 |
|------------|------|----------------|------------|-----|
| 음성재판매      | 인터넷폰 |                |            |     |
| 10         | 3    | -              | 2          | 15  |

현안 문제점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 기간통신<br>사업자<br>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업무처리 지연 및 업무 처리 부서의 이원화</li> <li>· 통신망간 접속방법 미확정 등</li> <li>- 할인율 및 수수료의 이원화 체계로 인한 중과세 가능</li> <li>· 기존 가입자의 수수료 지급 불가 등</li> <li>- 집단전화구역내의 별정통신사업 곤란</li> <li>- 구내통신사업자의 구외통신에 대한 재과금 비용 과다</li> </ul> |    |
| ○ 제도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화의 발·착신비율 규제</li> <li>- 전화세에 대한 부가세의 이중과세로</li> </ul>  |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 제도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피해 우려</li> <li>- 일부 전화국의 5자리 망식별번호 인식 곤란</li> </ul>  |    |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분별한 해외노드 구축 및 단독 전용회선 임대</li> <li>-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li> <li>- 사업자 난립에 따른 부당 행위 및 과당 경쟁</li> </ul> |    |

세부 개선방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추진일정 공개

○ 현황

- 별정통신사업제도는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 증대와 대형건물 등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관련 기술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6월 현재까지 대다수의 사업자는 대외적인 사업여건 미비로 사업 개시가 불투명함
- 특히, 한국통신 등 공중망사업자의 장기간 업무처리 지연과 통신망간 접속방법 등을 확정치 않아 별정통신사업자는 수개월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 KT는 지난 4월에 별정통신사업 관련 이용약관(전기통신서비스, 일반전화)을 개정한데 이어 4.1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에 와서 업무처리지침을 만드는 등 장기간 업무를 지연하고 있음
- 일부 음성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전용회선을 구축하고도 접속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KT 시내망 등과 접속을 할 수 없음
- 설비미보유·구내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약체결 방법, 수수료, 과금 및 세무관련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KT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음

○ 개선건의

- ☞ 빠른 시일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데이콤 등)의 종합적인 사업추진일정 공개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망
- ☞ KT의 다원화된 별정통신사업 창구(사업협력팀, 통신고객팀 등)를 단일화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할인율·수수료 체계의 일원화 및 수수료 지급 조건 완화

○ 현황

- 설비미보유재판매 또는 구내통신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모집, 과·수금 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다량사용 할인과 수수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등 세무관련 문제로 사업 곤란함
- 즉, 사업자는 영업전략에 따라 할인액과 수수료 총액범위내에서 추가할인 등으로 가입자를 확보할 경우 할인율 차이에 따른 과

세문제로 법인세법상 중과세 가능함

- 사업자의 할인율이 기간통신사업자의 할인율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 등으로 간주되며 특히, 사업자와 가입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일 경우 사업 자체가 곤란함

※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산 가능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조세를 부당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또한, 한국통신은 4.17일 업무설명회에서 모집가입자의 납입요금중 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최근 작성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기존 KT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침을 유보함에 따라 사업기반이 상실됨

○ 개선건의

- ☞ KT는 이원화된 할인료 및 수수료 ⇒ 할인료로 일원화 또는 할인료 확대,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 요망
- ☞ 또한, 수수료는 KT가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하도록 원상회복 조치 필요

□ 구내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현황

- 구내통신사업자는 구내전화 및 구내통신서비스(LAN 등)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이나 구내통신이 활성화되지 않아 초대형 건물을 제외하고는 수익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 아울러, 구내통신사업은 KT의 독점적 집단전화사업(한국통신 진흥(주) 운영·유지보수 대행) 분야와 중첩되어 경쟁력을 상실,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KT의 집단전화구역내에서는 사업 수행도 불가능한 실정임

- ※ KT의 집단전화이용약관 제12조(집단전화구역)에 의하면 집단전화구역내에서는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구역내에서 구내통신사업 불가

○ 개선건의

- ☞ 구내통신사업과 상충되는 KT의 집단전화이용약관 제12조(집단전화구역)의 규정중 "집단전화구역내에서는 구내교환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내용 삭제 요망
- ☞ 구내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KT는 집단전화 사업분야에서 철수하고, 이를 위탁업체인 한국통신진흥(주)에 이전, 동등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구내통신에서 구외통신부분의 과금방식 개선

○ 현 황

- 한국통신은 구내통신사업자를 대등한 통신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구내교환전화 가입자로 간주하여 구내자동발신회선(DOD)의 대표번호로 요금을 일괄 고지하고 있음

- 이에, 구내통신사업자는 구외통신부분의 일괄요금을 구내 가입자에게 재과금하고 수납해야 하므로 재과금시스템의 구축 등 구내통신과 무관한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발생함

- ※ 구내통신사업자는 일반전화가입자와 동일한 KT의 구내교환전화 이용약관을 적용받고 있음

- 또한, 접속방식, 상세과금정보 및 할인율(수수료) 등은 구내통신사업자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하나로통신 출범전까지는 KT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KT의 방침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가 결정됨

○ 개선건의

- ☞ 구외통신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과금하고, 구내통신사업자는 내선별 상세과금정보를 별도 제공하거나 중계선 접속방식으로 내선번호를 송출토록 조치 요망 다만,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자에게 과금을 위탁할 경우 적정 비용을 받고 대행토록 조치 요망
- ☞ 아울러,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사업에 본격 진출하여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내통신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기능이 요구됨

■ 국제통화의 발·착신비율 개선

○ 현 황

- 정부는 국제전화역무를 제공하는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의 총 발신대비 총 착신비율이 전체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율(97년도 100 : 90)과 비교,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규제근거 :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요금정산에 관한 협정승인 조건

- 정부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국제통화의 일방향 착신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통신특성상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총발신대비 총착신비율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 아울러, 국내에서 공전접속에 의한 국제통화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반전자교환기(전화국의 약 31%)의 기술적인 문제(5자리 망식별번호 인식 곤란)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발신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발·착신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움

※ 반전자교환기(M10CN, N0.1-A)는 특성상 15자리 이하의 전화번호만을 인식함에 따라 사업자의 망식별번호(5자리)가 기간통신사업자(001, 002)보다 2자리나 길어 일부 지역에서 국제전화의 발신이 곤란함

○ 개선건의

- ☞ 현실적인 규제의 어려움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감안하여 발신비율을 자율화하거나 20~30%로 완화하는 한편,
- ☞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착신서비스만을 불법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방안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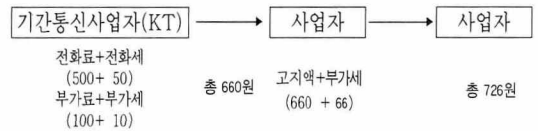
■ 전화세 징수권 위탁

○ 현황

-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부가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아 가입자에게

고지서를 재발급할 경우 고지서 총액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며

- 이때, 전화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가입자는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사업 곤란함



○ 개선건의

☞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전화세 징수권을 위탁, 고지서 발급시 전화세를 제외한 요금 고지, 사업자는 재과금 고지서 발급시 전화세를 부과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전화세 징수권의 위탁

- 전화세 징수권 위탁은 전화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위탁업무)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97. 2. 22일 사업법시행령 개정시 제6조를 개정, 제2항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칙에서 전화세법을 개정치 않아 전화세법 시행령 제7조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법시행령 제6조를 원상 회복시키거나 전화세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 필요

■ 망식별번호 재부여

○ 현황

- 정부는 설비보유유성재판매 사업자의 망식 별번호를 반전자교환기 사용 KT전환국에서 15자리 이상의 전화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5자리로 지정함

※ 반전자교환기 보유실태: 약 31.2%(M10 CN 17.2%, N.O.1-A 14%)

(출처: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정보통신부, 1997.9)

- 이에, 망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가 15자리를 초과할 경우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전화를 발신할 수 없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실정임

※ 미국 LA의 경우) 003XY + 1 + 213 + 000 + 0000(16자리)

- 또한, 3자리 망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불공평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므로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 개선건의

- ☞ KT 반전자교환기의 전량 교체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망식 별번호를 3~4자리로 재지정 요망

### ■ 해외노드 및 전용회선의 공동활용

#### ○ 현황

- 각 사업자마다 해외노드 및 전용회선을 경쟁적으로 개설, 임대하고 있어 노드 구축·운영 비용과 회선임대료 등이 과다 지출됨으로써 사업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통신표준도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 ○ 개선방안

- ☞ 통신표준의 호환성 확보 노력과 함께 해외노드의 구축·운영과 전용회선 임대 등에 대해 별정통신사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 ○ 현황

- 기간통신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여건을 위축시키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 개선방안

- ☞ 별정통신사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시 수집하여 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토록 함

### ■ 재과금 시스템 공동 구매

#### ○ 현황

- 재과금·구내통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과금(빌링)시스템은 업체마다 장비 종류, S/W 및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업체 선정·구매에 애로를 겪고 있음

#### ○ 개선방안

- ☞ 별정통신사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위원사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재과금 시스템의 수요업체 및 공급 기능 업체를 조사하여 공동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함
- ※ '98. 6. 15, '98 별정통신사업활성화 촉진 세미나를 개최, 관련 업체를 초청하여 재과금 시스템을 소개